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9-57
----------	---------

제출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수승대관광지 내 노지에 있는 일반텐트 이용료 규정을 삭제하여 미등록 야영지에서 야영행위를 근절하고, 부당한 이용료 징수규정을 정비하여 야영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이용자의 안전 등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야영장 이용료에서 일반텐트(노지) 규정 삭제(안 별표 1 나목)

(단위: 원)

구분	일반텐트(노지)	야영데크	오토캠핑장	비고
이용료	6,000	10,000	25,000	1박 기준

나. 야영장 이용권 서식 삭제(안 별지 제2호서식)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관광진흥법」 제3조, 제4조, 제67조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합의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9. 3. 14.~4. 4.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반영함(별지 제1호서식 성별구분 항목 신설)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수송대관광지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수송대관광지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별표 1 나목 중 “일반텐트(노지)”란을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의2서식,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별지 제1호서식]

수송대 축제극장 사용 신청서

신청인	주소			
	직업 또는 단체명		전화	
	성명 또는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사용 시설	기본시설			
	부대설비			
내용	사용시간			
	사용목적			
	행사내용			
	사용인원	<u>총: 명(남: 명/여: 명)</u>		
	비고			

「거창군 수송대관광지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송대 축제극장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

[별지 제1호의2서식]

수승대 축제극장 사용변경 신청서

단 체 명			대 표 자 성 명		생년 월일	(남/여)
단체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 주소				전 화 번 호	사무실	
					자택	
행사의 명칭						
변 경 사 항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사용일시					
	시설사용					
	부속설비					
	그밖의사항					
변 경 사 유						
「거창군 수승대관광지 시설이용료 징수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거창군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야영장 데크 이용권 서식

야영장 데크 이용권 원본	야영장 데크 이용권 영수증
일련번호: 구분: 요금: 원 발행일:	일련번호: 구분: 요금: 원 발행일:
거 창 군 수	거 창 군 수 (인)

120밀리미터×60밀리미터(백상지 100그램/제곱미터)

오토캠핑장 이용권 서식

오토캠핑장 이용권 원본	오토캠핑장 이용권 영수증
일련번호: 구분: 요금: 원 발행일:	일련번호: 구분: 요금: 원 발행일:
거 창 군 수	거 창 군 수 (인)

120밀리미터×60밀리미터(백상지 100그램/제곱미터)